

문 12. 민방위기본법령상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㉠ ~ ㉤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(㉠)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(㉡)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·도 계획을 매년 (㉢)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·군·구 계획을 매년 (㉣)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
㉠	㉡	㉢	㉣
① 9월 말	10월 10일	10월 말	11월 말
② 9월 말	10월 말	11월 10일	12월 말
③ 10월 말	11월 10일	11월 말	12월 말
④ 10월 말	11월 말	12월 10일	12월 말

문 13. 민방위기본법령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9년 11월 30일 현재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없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
- ㄱ.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
- ㄴ. 25세의 등대원
- ㄷ. 입학한 날부터 7년이 되는 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
- ㄹ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27세의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

- ① ㄱ
- ② ㄴ, ㄹ
- ③ ㄱ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17.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 없이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·지역·대상·사유·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대원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,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,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.

문 18.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철도·궤도·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·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·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·이전·분산·소개(疏開)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.
- ③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·지역·기간·방법·사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,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보상을 요하는 응급조치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일부터 30일 내에 손실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